

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합니다. ‘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’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 강화 및 중요성 인식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

다. 또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